스토킹범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이 콘텐츠는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트리고 심지어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무엇인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킹 ·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 · 의료 · 주거 등의 보호 · 지원제도와 범죄피해회복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1
1. 스토킹과 교제폭력 4
1.1.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범죄?! 4
1.1.1.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4
1.1.2. 교제폭력 8
2. 도움 요청하기 12
2.1.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12
2.1.1.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12
2.1.2. 신고하기 15
2.2.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18
2.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18
2.2.2.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22
3. 피해자 보호·지원받기 24
3.1. 피해유형별 보호·지원제도 24
3.1.1.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24
3.1.2.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29
3.2. 피해회복 지원과 피해예방 노력 32
3.2.1.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32
3.2.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34
4.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36
4.1. 2차 피해 예방하기 36
4.1.1. 피해자일 뿐인데 왜?! 36
4.2. 개인정보 보호하기 38
4.2.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8
4.2.2.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40

1. 스토킹과 교제폭력

1.1.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범죄?!

1.1.1. 스토킹과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와 그 유형

"스토킹행위"란?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Q.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캡처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며 애인인 척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스토킹일까요?**
>
>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3~4면 참조>

스토킹 관련 법령

▪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처 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19호·제40호·제41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불법정보의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정보의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4조제1항 및 제319조제1항 등	[폭행] 신체에 대해 폭행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협박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	[여성폭력]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	-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7면 참조>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스토킹범죄"란?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Q. 전 애인이 SNS로 안부를 물으며 현재 저의 거주지 및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피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행위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범죄수사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3~4면 참조>

위반 시 제재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 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구 분	내 용
수강명령	집행유예인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병과 ·실형: 형기 내에서 집행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집행

▪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 11.) 참조].

1.1.2. 교제폭력

교제폭력과 그 유형

"교제폭력"이란?

▪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교제관계"란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교제폭력의 유형

▪ 교제폭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내 용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정서적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경제적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신체적	다른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행위
스토킹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Q. 애인이 저와 의견이 엇갈리거나 다툴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데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런 것도 교제폭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건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출처: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여성가족부, 2018. 1.) 32~58면 참조>

교제폭력, 혹시 해당하는 문항이 있나요?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 교제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행동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보입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이러한 특성으로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 분	내 용
관계유형	•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이다.
행위유형-성적폭력	• 성적·신체적 사진·동영상(합성 포함)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 •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 나의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다.
행위유형-신체적폭력	•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려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험한 적이 있다. [★★]
행위유형-경제적폭력	•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 [★] •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내 자산(소득) 사용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한다.
행위유형-정서적폭력	•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 [★] •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주변(가족·지인·반려동물 등)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 [★]
행위유형-강압적 통제	•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 등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 • 휴대전화나 SNS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 [★] •외출을 막거나, 어디에 가두려고 한 적이 있다.
행위유형-스토킹	• 나와 가족(주변인 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을 한다. [★★]

▪ 행위유형에서 [★]에 “그렇다”라고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상담기관(1366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위유형에서 [★★]에 “그렇다”라고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경찰(112)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유형이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면 상담기관(1366 등)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교제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서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은 교제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교제폭력 피해자는 정부정책 또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움 요청하기

2.1.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2.1.1.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찾아가기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했던,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만으로도 지원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8.) 8면 참조].

구 분	기 존	변 경
여성긴급전화 1366	O	O
해바라기센터	X	O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O	O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X	O

상담소의 설치·운영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참조).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참조).

상담소의 업무

▪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 피해 신고접수 및 관련 상담
-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의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관련 조사·연구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치료·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종합병원, ③ 지방의료원 또는 ④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해바라기센터는 기능에 따라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202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91~105면 참조).

>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주소·연락처·홈페이지 및 각 센터의 기능(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에 대한 상세정보는 「202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구 분	내 용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전국 상담소 안내(www.hotline.or.kr)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가능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소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전국 상담소 안내(www.ywca.or.kr)
남성의 전화 (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금요일 오후 18시~20시 야간상담 가능)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상담 관련 안내(www.manhotline.or.kr)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 ·방문상담 시 사전예약 필요 ·상담 관련 안내(www.kswpc.or.kr)

> ※ 각 지역에 위치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주소 및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한 대상·범위·내용 및 방법은 상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상담소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 불법촬영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와 연계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수사·법률·의료 등의 사후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44면 참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는 긴급전화센터인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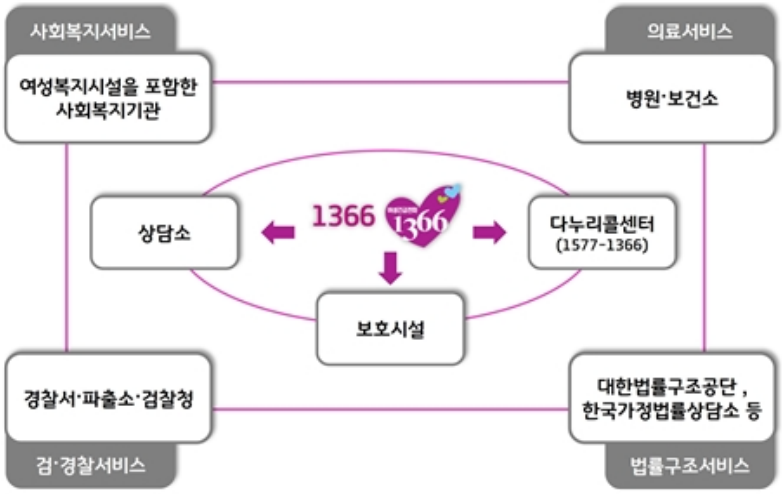
▪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참조).

▹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60면 참조>

※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려면 ☎ 1366 또는 ☎ 해당지역 지역번호+1366(특정 지역의 1366센터로 상담 요청 시)으로 전화하면 되며, 각 지역 센터의 위치 및 홈페이지 안내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유형별 서비스-상담코너-여성폭력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상담소 등은 모바일 환경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 참조).

예시)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구 분	내 용
1:1 채팅상담	전문상담원과 1:1로 채팅을 통해 상담
게시판 상담	게시판에 고민이나 궁금한 점, 피해 사례 등을 글로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답변
	카카오톡에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an1366)’ 친구추가 후 상담원과 1:1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

※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쉼터 등의 보호시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이용하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13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54면 및 <다누리포털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참조).

※청소년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의 문자·온라인·전화상담(☎ 1388) 또는 탁틴내일(www.tacteen.net)의 방문·전화상담(☎ 02-3141-6191)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1.2. 신고하기

긴급신고는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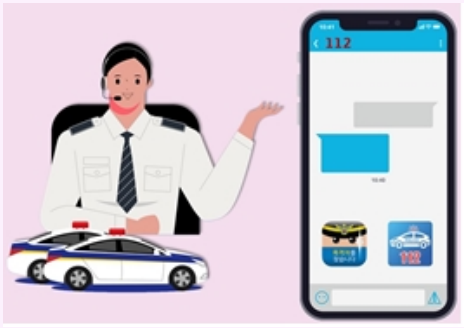
전화신고

▪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땐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12신고앱(문자·녹음·영상신고 가능)”이나 “112 신고포털(모바일)”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 전화 후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보이는 11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12신고포털-알림마당-국민 비상벨 112-올바른 112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신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개별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신변안전조치 등	성폭력이 수반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이 수반된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대상 및 유형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80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 참조].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참조).

▪ 위험도에 따른 등급별 신변안전조치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10일 이상 안전숙소·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제공사항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선택적 제공사항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보호 ·가해자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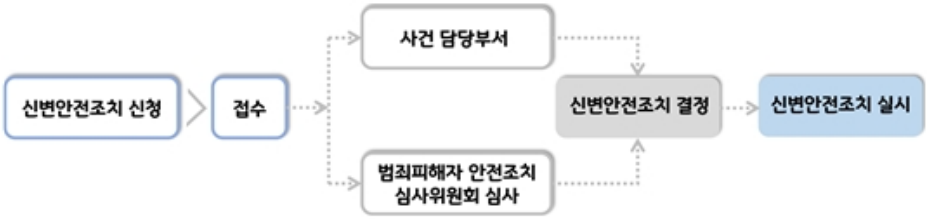
<출처: "경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위험등급별 대응"(연합뉴스, 2021. 12. 30.) 참조>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참조).

-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
-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참조).



▪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란 신변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둔 것으로, ① 신변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② 신변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③ 신변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심사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개편해서 위험도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 데 이어,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되면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선제 대응´...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연합뉴스, 2022. 3. 3.) 참조].

2.2.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2.1.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성격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사후승인)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응급조치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범죄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함)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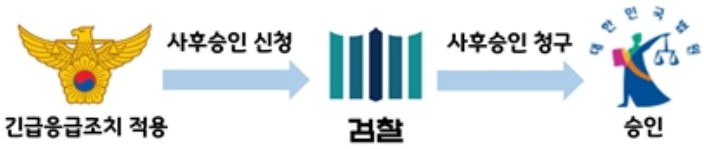
-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결정한 때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그 즉시 ① 스토킹행위의 요지, ②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 만약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취소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항).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아서 긴급응급조치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잠정조치(사전승인)

재범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구 분		잠정조치 기간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3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잠정조치의 통지·집행

▪ 잠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잠정조치를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잠정조치(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은 후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Q. 데이트폭력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없나요?**
>
>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당사자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및 「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와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권리에 대한 통지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인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잠정조치

▪ 법원은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의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조치의 변경·취소

긴급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잠정조치

▪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항고 및 재항고

항고·재항고 이유

▪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항고와 재항고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청 및 결정

▪ 항고(재항고)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장(재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대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제2항).

▪ 항고·재항고의 결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에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재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고법원(대법원)은 항고(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15조 참조).

3. 피해자 보호·지원받기

3.1. 피해유형별 보호·지원제도

3.1.1.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상담치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등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6. 1.) 99면 참조].

-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 구조대상 및 구조비 지원기준(「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99~100면 참조).

- **[구조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입증자료]**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②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③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구비 가능한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보조사업자 및 지원기준]**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600만원(보전사건 제외) 초과 시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구 분	보조사업자	구조비 지원기준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등은 40만원 기준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스토킹·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법률홈닥터"제도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문제 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및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 법률홈닥터가 있는 가까운 기관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법률홈닥터 홈페이지-법률홈닥터 소개-이용안내> 참조

> ※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82면·471면 참조).

▪ 지원 범위 및 기준(「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82면 및 471면 참조)

▹ [지원범위]

√ 의료상담·지도

√ 신체적·정신적 치료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낙태·출산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세부 지원기준
성폭력	·비급여 심리치료를 제외한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전액 지원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시 자부담)	·1회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검사·비급여항목 지원 요구 또는 총 진료비용 500만원 초과 시 ① 주치의 소견서 검토, ② 내부 사례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가정폭력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 [지원기간]

구 분	내 용
성폭력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가정폭력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피해발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첨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 상담·지도 및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긴급피난처/주거 지원

긴급피난처

▪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69면 참조).

▪ **[긴급피난 요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 및 경찰 요청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70면 참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용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05면 참조).

▪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6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면 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08면 참조).

보호시설 지원

보호시설의 종류 및 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제4항).

성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구 분	입소기간	구 분	입소기간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6개월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 시설별로 연장 기간 및 횟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피해자의 의료지원·수사기관 및 법원 동행·법률지원 연계 등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입소대상 및 비용지원

▪ 보호시설 입소는 ① 피해자로서 본인이 직접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③ 검사·경찰관서의 장·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아동교육지원비 신청 시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포함)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보호시설 퇴소 및 자립지원금 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지원금 신청은 “보호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509면 참조).

> ※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지역의 상담소 또는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3.1.2. 피해유형별 추가 지원사항

성폭력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비밀전학·돌봄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72면 참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했을 경우에는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72면 참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했을 경우에는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특별지원보호시설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73면 참조).

비밀전학 지원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99면 참조)

▹ [초등학교] 보호자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해야 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진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돌봄 비용 지원

▪ ①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②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06면 참조).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연장 시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연장 시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 **[신청방법]**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① 신청서, ②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 ③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

가정폭력이 수반된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 주택공급·자립지원·비밀전학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24면 참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 퇴소했을 경우에는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24면 참조).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제도

▪ 보호시설 입소자나 그룹홈 입주자는 자립·자활을 위해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실질적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직업교육비 또는 학원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414면 참조).

비밀전학 지원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 [초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 [중학교·고등학교]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배정해야 합니다.

>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복지가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요건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구조금 지급신청 및 소멸시효

▪ 구조금을 받으려면 “구조금 지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 구조금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제31조).

> ※ 구조대상 범죄피해 및 구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지원-구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피해회복 지원과 피해예방 노력

3.2.1.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스마일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살인·강간·방화·강도·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회복프로그램 등 일상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스마일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병원에 연계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을 처방합니다.

심리평가 및 치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학자가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회복을 돕기 위해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범죄 현장 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1개월 간의 임시 거주지 및 입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회복프로그램

유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출처: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 <출처: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참조>

> ※ 전국 스마일센터의 연락처, 주소 및 이메일은 <스마일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전국 스마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간병비·돌봄비용·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심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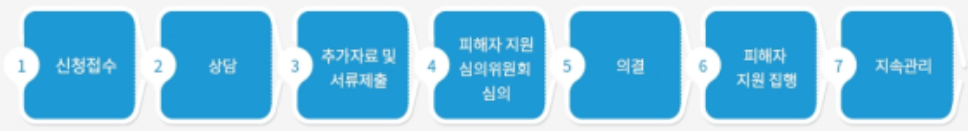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LH 주거지원 신청절차 안내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 <출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 <출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락처(☎ 1577-1295),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센터안내-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 등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8. 2.) 참조].

▪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제3항 및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813면 참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1항).

▪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하고, TV 강연,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3항·제4항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참조).

집중 단속주간 시행

스토킹·교제폭력 집중 신고기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주간, 가정폭력 추방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0조제2항).

▪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및 “교제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스토킹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제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입니다」(경찰청 브리핑, 2020. 6.) 및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경찰청 브리핑, 2021. 12.) 참조].

4.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4.1. 2차 피해 예방하기

4.1.1.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2차 피해

"2차 피해"란?

▪ "2차 피해"란 피해자가 ①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또는 ③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참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1항·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군검찰부
- 경찰청·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1호 및 제6조의2제1항·제2항)

직장 내 2차 피해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위반 시 제재

▪ 직장 내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참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피해 접수 및 동행 시

▪ 경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②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③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조).

▪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제3항).

▪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관서로 동행 시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항).

조사 및 이후 절차

▪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태도나 불필요한 질문을 삼가고, 피의자와 대질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와 분리해서 조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또한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이 노출되면 안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해서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제6항).

▪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제5항제4호).

▪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로 안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0조제1항·제4항).

4.2. 개인정보 보호하기

4.2.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서류제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서류제도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

▪ 경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하고 진술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제3항·제4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가명서류 등이 작성되거나 가명진술서 등이 제출된 경우 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소장 작성 시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제2항).

- 피해자의 성(姓)을 제외한 이름
-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호수 등 상세한 주소
- 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가명서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신청방법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명서류·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서류 등의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및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제3항).

▪ 비실명처리 대상정보는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실명처리는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접착식 메모지·접착식메모테이프·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9조의3 참조).

- 성명에 준하는 정보: 호, 아이디, 닉네임 등
-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피해자 진술 등의 공개 제한

▪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또한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비밀누설금지 및 언론접근 제한 등

비밀누설금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제3호).

▹ 경찰관은 성명·연령·주거지·직업·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

▹ 검사는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CD, 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물은 사건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 피해자보호팀은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집과 회사에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고 소송까지 하게 되면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나요? 그럼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A.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 검찰 조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경찰조사단계]** 진술자의 의사·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범죄의 종류·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주소·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 참조).
- **[검찰조사단계]** 공소장 작성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의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밖에도 가명서류·가명진술서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제2항).
- [소송단계] 법원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기록·서류 등의 열람·복사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제3항).

4.2.2.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성폭력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
- 존속살해(尊屬殺害),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행위의 피해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형법」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

입증자료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5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의 예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제도안내-입증자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구 분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접수기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소요기간: 3주
운전면허증	·접수기관: 전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소요기간: 15일(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
여권	·접수기관: 시·군·구 및 광역시·도청(여권업무대행기관) ·소요기간: 4-5일
은행·보험 ·신용카드	·접수기관: 각 기관별 내방 또는 유선 ·소요기간: 즉시
유선·휴대 전화·인터넷	·접수기관: 대리점(직영점) 내방 또는 유선 ·소요기간: 1일 내
건강보험	·1~2주내 자동변경(문의: ☎ 1577-1000)
국민연금	·1~2주내 자동변경(문의: ☎ 1355)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열람·발급 제한 사유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을 제시하고,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증거서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열람·발급 시 본인 통보 서비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일자,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 사유를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0항).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사하는 곳마다 쫓아오고 한 번은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기도 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보호시설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소지를 알아내는 듯한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참조).

그 밖에도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비밀전학 지원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참조).